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1조제1항제7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법 제11조제1항제7호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에 따른 상장규정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조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주주 수 또는 상장주식 수 등 주식분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2. 주식거래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 시가총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제23조제3항 전단 중 “15명”을 “13명”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4명, 금융감독원장이 추천하는 위원”을 “2명, 금융감독원장이 지명하는 소속 회계 관련 부서의 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

며,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5항) 중 “회계법인 및 회계정보이용자”를 “회계정보이용자”로, “한국공인회계사회”를 “금융감독원장이 추천하고, 한국공인회계사회”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중전의 제10항) 중 “제9항”을 “제10항”으로 한다.

⑤ 회계법인을 대표하는 위원은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위촉한다.  
제29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회사, 회사의 감사인 및 그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법 제6조 제6항을 준수하였는지에 대한 감리 업무

제44조제2항제1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영 제29조제2호”를 “영 제29조 제2호·제3호”로 하고, 같은 항 제1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영 제29조제1호”를 “영 제29조제1호 및 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주권상장 법인이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제출하는 재무제표를 접수하는”을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주권상장법인이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제출하는 재무제표를 접수하는 업무
2. 법 제11조에 따른 감사인 지정 관련 회사와 지정감사인 간의 분쟁(제16조제2항제5호와 관련한 분쟁을 말한다)의 자율조정(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 관한 업무

대통령령 제29269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 개정령 부칙 제3조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2022년 12월 3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제9조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2024년 12월 3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 전까지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대통령령 제29269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 개정령 부칙 제3조제2호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 부 칙

제1조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사인 지정받는 회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사업연도가 시작되는 회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2024년 1월 1일 전에 사업연도가 시작된 종전의 제14조제3항제2호에 따라 지정된 회사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는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4조(증권선물위원회의 감사인 지정을 받는 회사) ①·② 삭제</p> <p>③ 증권선물위원회는 법 제11조 제1항제7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 중에서 공정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회사를 지정한다.</p> <p><u>&lt;단서 신설&gt;</u></p> <p>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에 따른 상장규정(이하 “상장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회사.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는 제외한다.</p> <p>가. <u>주주 수 또는 상장주식 수 등 주식분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u></p> <p>나. <u>주식거래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u></p>	<p>제14조(증권선물위원회의 감사인 지정을 받는 회사)</p> <p>③ ----- 법 제11조 제1항제7호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에 따른 상장규정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p> <p>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는 제외한다.</p> <p>1. <u>주주 수 또는 상장주식 수 등 주식분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u></p>			

다. 시가총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2. 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는 상장규정에 따라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된 법인. 다만, 감사인이 회사가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같은 조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했는지 여부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 내용을 검토하거나 감사한 결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가.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된 경우

나. 감사인의 검토 또는 감사 범위에 제한이 있는 경우

다. 감사인의 검토 의견 또는 감사 의견이 표명되지 아

2. 주식거래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⑥ ~ ⑨ (생략)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한다.

제29조(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업무 등) 법 제2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2. (생략)

<신설>

제44조(업무의 위탁) ① (생략)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1. ~ 14. (생략)

15. 법 제26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이 영 제29조제2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감사인에 대하여 감리 또는 평가를 하는

⑦ ~ ⑩ (현행 제6항부터 제9항까지와 같음)

⑪ ----- 제10항-----  
-----  
-----  
-----.

제29조(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업무 등) -----  
-----  
-----.

1. 2. (현행과 같음)

3. 회사, 회사의 감사인 및 그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법 제6조제6항을 준수하였는지에 대한 감리 업무

제44조(업무의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1. ~ 14. (현행과 같음)

15. -----  
----- 영 제29조제2호·제3호-----  
-----

업무(이하 이 호 및 제4항에서 “감사인 감리등”이라 한다)

가.·나. (생략)

16. 법 제26조제1항제2호 및 이  
영 제29조제1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회사에 대하여 감리  
를 하는 업무(이하 이 호 및  
제4항에서 “회사 감리등”이라  
한다)

가. ~ 다. (생략)

17. ~ 22. (생략)

③ 증권선물위원회는 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이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제출하는  
재무제표를 접수하는 업무를 거  
래소에 위탁한다.

<신설>

<신설>

④ ~ ⑧ (생략)

-----  
-----

가.·나. (현행과 같음)

16. -----  
영 제29조제1호 및 제3호-----  
-----  
-----  
---

가. ~ 다. (현행과 같음)

17. ~ 22. (현행과 같음)

③ -----  
----- 다음 각 호의 -----  
-----  
-----  
-----.

1. 주권상장법인이 법 제6조제4  
항에 따라 제출하는 재무제표  
를 접수하는 업무

2. 법 제11조에 따른 감사인 지  
정 관련 회사와 지정감사인  
간의 분쟁(제16조제2항제5호  
와 관련한 분쟁을 말한다)의  
자율조정(당사자의 신청이 있  
는 경우에 한한다)에 관한 업무

④ ~ ⑧ (현행과 같음)

대통령령 제29269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부칙

제3조(내부회계관리규정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업연도의 첫날부터 적용한다.

1.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 2022년 12월 3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 <단서 신설>

2.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인 주권상장법인: 2023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29269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부칙

제3조(내부회계관리규정에 관한 적용례) -----  
-----  
-----  
---

1. -----  
-----  
-----  
-----  
----- . 다만, 2022년 12월 3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제9조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2024년 12월 3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 전까지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  
-----  
----- 2028년 12월 3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

3. 그 밖의 주권상장법인: 2024  
년 12월 3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

-----

3. ----- 2029  
년 12월 31일 -----  
-----